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38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 김문수ㆍ허성무ㆍ문정복

김준혁 • 박지원 • 박희승

강준현 • 진선미 • 강경숙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단계적으로 확대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현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위한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속가능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재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시점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1만분의 2,079"를 "1만분의 2,10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	②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1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					
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					
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					
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1만분의 2,109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	<u><삭 제></u>				
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					
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u>있다.</u>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u><삭 제></u>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					

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 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 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 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 | <삭 제> 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